

별첨-1 전형 단계별 가산점 기준

구분	주요 내용				
1. 서류전형(1차)					
① 국가유공자	<table> <tr> <th>10% 가점 대상자</th><th>5% 가점 대상자</th></tr> <tr> <th>만점의 10%</th><th>만점의 5%</th></tr> </table> ※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※ 가점 부여 범위 여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) 등 제1항, 제2항, 제3항 및 지침(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) 적용	10% 가점 대상자	5% 가점 대상자	만점의 10%	만점의 5%
10% 가점 대상자	5% 가점 대상자				
만점의 10%	만점의 5%				
② [장애인] 가점 5점					
③ [재단 체험형 인턴 우수인턴지정자] 가점 3점	▶ '16년 이후 재단 체험형 인턴 경력자로서 우수인턴으로 지정된 사람				
④ [비수도권 지역 인재] 가점 3점	▶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했거나 재학·휴학 중인 사람 / [별첨-2] 참조				
⑤ [저소득층] 가점 3점	▶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관련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				
⑥ [북한이탈주민] 가점 3점	▶ 「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※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				
⑦ [다문화가족] 가점 3점	▶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의한 정의 중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 ※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사람				
⑧ [자립준비청년] 가점 3점	▶ 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」에 따른 '청년'에 해당하는 자 ※ 자립준비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사람				
◆ (공통사항) 가점은 최대 15점까지 부여	▶ 단, ③ 재단 체험형 인턴 우수인턴 지정자, ④ 비수도권지역인재, ⑤ 저소득층, ⑥ 북한이탈주민, ⑦ 다문화가족, ⑧ 자립준비청년 가점은 중복 시에도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가점 부여				

구분	주요 내용	
2. 필기전형(2차)		
① 국가유공자		
10% 가점 대상자		5% 가점 대상자
만점의 10%		만점의 5%
※ 가점 부여 범위 여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) 등 제1항, 제2항, 제3항 및 지침(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) 적용		
② [장애인] 가점 5점		
◆ (공통사항) ① ~ ②의 가점은 최대 10점까지 부여		
3. 면접전형(3차)		
① 국가유공자		
10% 가점 대상자		5% 가점 대상자
만점의 10%		만점의 5%
※ 가점 부여 범위 여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) 등 제1항, 제2항, 제3항 및 지침(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) 적용		
② [장애인] 가점 5점		
◆ (공통사항) ① ~ ②의 가점은 최대 10점까지 부여		

※ 차기 채용 시, 가산점 부여범위 및 배점, 방식 등 검토 후 조정/변경될 수 있음